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가. 2016. 9. 28. 개관 이후 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운영 중인 구미시 추모공원의 위탁기간이 2025. 12. 31.에 종료됨
- 나. 화장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구미도시공사와의 위·수탁 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진 장사문화 정착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장례문화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무명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 나. 추진근거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
- 다. 위탁사무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전반
 - (1) 구미시추모공원 운영 및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 (2) 사용허가 및 사용료 납부 관리

- (3) 각종 시설 안전관리 및 수익시설 운영
-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

- (1) 시설명 : 구미시추모공원
- (2) 위치 : 구미시 옥성면 추모공원로 81
- (3) 개관일 : 2016. 9. 28.
- (4) 시설규모

구분	내용
규모	부지면적 : 137,821㎡ (화장시설 111,854㎡, 도로 25,967㎡) 대지면적 : 32,691㎡ / 건축면적: 4,323.89㎡ 연면적 : 7,397㎡ / 조경면적: 8,478.5㎡ / 진입도로 : 805m 주차장 : 126면
화장로	7기 설치(8기 규모)
유택동산 (산골시설)	지하1층 35.41㎡ / 지상1층 42.32㎡
시설현황	지상3층 : 옥상정원,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상2층 : 유족대기실(7), 식당, 매점, 카페테리아 지상1층 : 고별실(3), 수골실(2), 용품점, 접수실, 사무실 지하1층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야외 : LPG저장고, 오폐수처리시설, 재활용품처리장

마. 위탁기간 : 2026. 1. 1. ~ 2030. 12. 31. (5년)

※ 2016. 8. 10. ~ 2025. 12. 31. (구미도시공사 위탁 운영)

바. 소요예산 : 2,477,499천원 * 2026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계	인건비	시설운영비	지원부서분담금
2,477,499	958,420	1,195,927	323,152

사. 위탁방법 :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

아. 공유재산심의 : 가결 ※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자. 기존 수행기관 운영 현황

(1) 운영실적

(‘25. 8. 31. 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일반시신		사산아	개장 유골	비 고
		만15세 이상	만15세 미만			
계	34,466	26,776	158	122	7,410	
2025년	3,991	2,871	10	23	1,087	일평균 16.4
2024년	4,223	3,760	18	12	433	일평균 11.6
2023년	4,502	3,323	16	5	1,158	일평균 12.3
2022년	4,638	3,938	17	7	676	일평균 12.8
2021년	3,820	3,210	10	17	583	일평균 10.5
2020년	4,192	3,079	14	9	1,090	일평균 11.5
2019년	2,790	2,327	16	16	431	일평균 7.7
2018년	2,620	2,186	25	11	398	일평균 7.2
2017년	3,106	1,794	28	19	1,265	일평균 8.6
2016년 (9.28 ~ 12.31)	584	288	4	3	289	일평균 6.2

(2) 수입실적(사용료 수입)

(‘25. 8. 31.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980,030	1,067,820	1,040,140	1,148,025	980,470	999,470	591,080
화장료	979,170	1,066,740	1,039,130	1,147,320	979,310	998,380	590,210
유택동산	860	1,080	1,010	705	1,160	1,090	870

※ 누적 수입료 : 7,896,745천원 (화장료 : 7,885,610천원, 유택동산 : 11,135천원)

3. 부서 의견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설 화장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 나.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탁 추진이 적정함
- 다. 구미도시공사는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장례지도사와 전기, 기계, 대기 환경 등 화장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직 인력을 바탕으로 개관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탁 사무 전반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를 매년 시행하여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확보가 용이하므로 구미도시공사와 위·수탁 협약 기간을 갱신하여 구미시추모공원 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 (2)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른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조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 화장 시설·공설봉안시설·공설자연장지 및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이나 장사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사업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추모공원 운영·관리 위탁 시 사업운영으로 인한 재정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2026년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사업운영비를 산정하였으며, 연2,477,499천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나. 2차 연도부터 인건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3% 인상함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세출	2,477,499	2,551,823	2,628,377	2,707,228	2,788,444	13,153,371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합계
시 비	2,477,499	2,551,823	2,628,377	2,707,228	2,788,444	13,153,371

5. 부대의견 : 인건비·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팀 김시훈(480-516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요내용	금액	비 고
합 계	총계	2,477,499	
인건비	소계	958,420	
	보수	805,724	15명(일반 2, 기술 2, 장래지도사 1, 공무원 7, 실버직 3)
	퇴직급여	74,237	
	평가급	78,459	
시설운영비	소계	1,195,927	
	사무관리비	21,175	사무용품, 청소용품 등
	지급수수료	151,160	소방 전기·대기오염측정료 등
	교육훈련비	3,150	안전관리자 교육 등
	임차료	11,080	정수기, 복합기 등
	복리후생비	37,034	피복비, 급식비 등
	공공요금	20,963	통신비, 보험료, 공과금등
	차량비	2,499	유류비, 소모품 정비 등
	여비	13,440	
	일반재료비 및 약품비	11,370	살충제, 부식방지제 등
	수선유지비	525,433	화장로 유지관리, 필터부품 교체 등
	동력비	390,623	전기, 가스, 상하수도료 등
	부서업무비	3,000	
	배상금등	500	
	물품구입	4,500	
지원부서 분담금	총 경비의 약 15%	323,152	

소 관 부 서		어르신복지과
입 안 자	과 장	최 창 수
	팀 장	김 희 정
	담 당 자	김 시 훈 (480-5163)